



@들어다보기

2016년 3월31일(통권16-01)

담당자 허지연 정책간사
070-8897-8386, delay@cubs.or.kr

www.cubs.or.kr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수, 얼마나 되나

I. 공공기관이란

-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출자·투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을 말함.

II. 관련법령에 의한 공공기관 내역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 적용대상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 포함)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직원 정원 20인 이하 기관은 제외됨

[표 1] 공운법 대상기관 현황

구분	'15년	'16년	증감
① 공기업	30	30	
▪ 시장형	14	14	
▪ 준시장형	16	16	
② 준정부기관	86	90	+4
▪ 기금관리형	17	16	△1
▪ 위탁집행형	69	74	+5
③ 기타공공기관	200	203	+3
계	316	323	+7

<출처: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감법)

■ 적용대상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중 관장 사무, 예산 규모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직원 정원 100인 이하 기관은 제외됨

[표 2] 공감법 대상기관 현황

구분	'15년	'16년	증감
① 공기업	30	30	
■ 시장형	14	14	
■ 준시장형	16	16	
② 준정부기관	86	90	+1
■ 기금관리형	17	16	△1
■ 위탁집행형	69	74	+5
③ 기타공공기관	104	105	+1
지방공사	35	37	+2
지방공단	50	50	
공영 방송사	2	2	
각종 공제회	4	4	
계	311	323	+7

<출처: 감사원 홈페이지>

(3) 공직자윤리법

■ 적용대상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 포함),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표 3] 공직자윤리법 대상기관 현황

구분	2015.01.01	2015.07.01	증감
한국은행	1	1	
공기업	30	30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40	142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366	361	△5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26	27	+1
업무위탁/대행기관	11	18	+7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355	363	+8
기타공공기관	13	22	+9
계	942	964	+22

<출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4) 공공기관 수 증감 추이

- 공운법이 시행된 다음 해인 2008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공공기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 305개였던 것이 2010년에는 208개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16년에는 323개로 늘어났음.

[표 4] 공공기관 수 증감추이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① 공기업	24	24	21	27	28	30	30	30	30
▪ 시장형		6	8	14	14	14	14	14	14
▪ 준시장형		18	13	13	14	16	16	16	16
② 준정부기관	77	80	79	83	83	87	87	86	90
▪ 기금관리형		16	16	17	17	17	17	17	16
▪ 위탁집행형		64	63	66	66	70	70	69	74
③ 기타공공기관	204	193	184	176	177	178	187	200	203
신규		9	18	8	5	10	10	20	12
해제		17	9	6	3	3	1	6	5
계	305	297	284	286	288	295	304	316	323

<출처: 각 년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III.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 현재 공공기관 지정은 총수입액, 정부지원액, 사실상의 지배력, 자체 수입액 등을 기준으로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여 여전히 많은 공적 기관들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음.
 - 현재 「공운법」에는 국가의 재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지정할 지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음.
- 「공운법」에 의거하여 2016년에 지정된 공공기관의 수는 323개 기관으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500여개의 기관 가운데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공공부문의 범위를 가장 넓게 잡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964개(2015년 7월 현재)와 비교하면 약 1/3에 불과함.

- 「공운법」에는 지정된 공공기관을 기관의 규모, 성격, 운영형태 등에 의해 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분류의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즉 공공기관의 유형구분 권한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상적·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과연 각 기관들이 유형별로 타당하게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현재 「공운법」에는 직원 정원 외에 별다른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므로써 기타공공기관 가운데서 인력과 자산, 수입 등 규모나 중요도 면에서 준정부기관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기관도 획일적으로 기타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공운법」에 따라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은 정관, 이사회, 임원임명, 예산회계, 경영평가와 감독 등에 대해 각종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을 되는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공공기관 기능조정,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사항만 적용받고 있음. 정부산하의 대형 기관들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며 분류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음.
- 「공운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과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의 수는 총 120개로 공운법에서 지정한 전체 공공기관 323개의 37%에 불과.
-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되는 기관 유형 및 판단 기준을 법령으로 구체화하여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유형구분에 있어 기관 업무 특성 및 재원구성상 특징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에서 「공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지정고시도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어떤 기준에 의해 지정되고 유형이 분류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움. 따라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백서 발간을 통해 공공기관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함.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2011. 12
-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2010. 12
- 기획재정부, 「2016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16. 01. 29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2016년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 감사원, 「2015년도 공감법 적용 대상기관 현황」
- 인사혁신처, 「2015년 상반기 재산공개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문」